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13 선고 2020가단519507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1.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이현

담당변호사 이경석, 이복동

변론 종결2021. 12. 9.

판결 선고2022. 1. 13.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25,714,518원 및 그 중 25,680,219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2021. 5. 10.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주위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4. 1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취소를 소외 C에게 통지하라. 예비적으로 피고 B와 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4. 18.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25,714,518원 및 그 중 25,680,219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7. 4. 24. 피고 A(상호 D)과 사이에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2. 3. 31., 약정 연체이율 2020. 1. 1.부터 연 7%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피고 A은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피고 A은 2020. 4.경부터 E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을 대위하여 2020. 7. 16. E은행에 대출원리금 27,147,125원을 변제하였고, 2020. 7. 16. 기준으로 대위변제잔액은 25,680,219원이고, 확정된 지연손해금은 34,299원이다.

[인정근거] 자백간주판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구상금 25,714,518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5,680,219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5. 10.까지 약정 연체이율인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은 2020. 4. 18. 피고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위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주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4.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피고 A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계약 취소를 임대인인 C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위 채권양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적으로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20. 4. 18.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25,714,518원 및 그 중 25,680,219원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 연 7%,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가액배상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 1) 피고들은 2009. 10.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2명(F생, G생)을 두었다.
- 2) 피고 A은 2011. 10. 11.경 C와 사이에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J은행의 대출금 포함), 기간 2011.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거주하였으며, 2013. 11. 7. 임차기간을 2년 연장하면서 임차보증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증액된 1,000만 원은 피고 B의 퇴직금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을나 제15호증 등 참조).
- 3) 피고 B는, 배우자 피고 A이 2018. 여름경부터 사업을 이유로 따로 생활하면서 부산에 거주하는 K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9. 4. 17.경 피고 A과 K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1108호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피고 A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9즈단76 채권가압류 신청1)을 하였다. 이후에도 피고 A은 서울에 거주하면서 주말마다 부산을 왕래하였다.

4) 피고들은 2020. 2.경 자녀들의 양육자를 피고 B로 정하기로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이혼계약을 작성하였다.

제3조 위자료는 피고 A이 피고 B에게 전세금 1억 1,000만 원에서 은행대출을 제외한 5,4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다(지급전까지는 피고 B의 동의 없이 전세 내놓지 않는다).

위 협의가 이루어질 시 피고 B는 K의 소송 모두 취하하기로 한다.

제11조(입회인)

1. 입회인(L법률사무소)은 이 계약에 의한 서로의 이혼에 관하여 사실을 확인하였고, 입회하여 당사자가 이혼(소송 내지 협의)을 이행하기로 약정하는데 입회 확인하였다.

2. 피고 A이 피고 M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원은 5,460만 원이다.

4. 피고 M는 위 계약이 이루어질시 K의 소송을 취하하기로 한다.

5) 피고 A은 위 협의이혼계약서에 따라 2020. 4. 18.경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위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고, 그 양도행위를 '이 사건 채권양도행위'라 한다), 같은 날 임대인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을 피고 B로 하고 월 차임 20만 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부동산(아파트)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6) 피고들은 2020. 6. 9. 서울가정법원 2020년32714호로 자녀들의 양육자를 피고 B로 정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의조정을 하고, 피고 B는 같은 날 K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재산분할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피고 A은 피고 B에게 이미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4,46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들은 서로 상대방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 등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나머지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7) 피고 A은 2020. 7. 9.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하였고, 피고 M와 자녀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

8) 한편 피고 A은 N생으로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D을 운영하다가 2020. 2.경 주식회사 O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데, 2020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면서 과세대상급여액을 31,056,200원으로 신고하였다. 피고 A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한 지역가입자 기준소득액은 2020. 2. 10.부터 2021. 4. 1.까지 월 280만 원, 2021. 4. 1.부터 월 250만 원이다. 그리고 피고 A은 2018. 10. 26. P 주식회사의 Q보험 3종(체증65세) GA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1,123,080원을 납부하다가 2020. 11. 6. 해약하였는데, 해약 당시 납입총액이 28,077,000원이었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을나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중랑세무서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P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에서 본 사실과 거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사해행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여 분할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혼시의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취소되는 범위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 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에서 본 사실과 거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재산분할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이루어진 재산처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들은 2009. 10. 22.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2명(F생, G생)을 두고 있는데, 모인 피고 B가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어 종전과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

② 피고 B는, 배우자 피고 A이 K과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과 K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A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4,000만 원, K에 대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이후 피고 A이 협의이혼계약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채권 중 금융기관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5,460만 원을 위자료로 피고 B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서울가정법원 2020년32714호 사건의 임의조정에서 위 5,460만 원 중 1,000만 원을 위자료로, 나머지 4,460만 원을 재산분할로 구분하였는바, 피고 A과 K의 부정행위로 피고들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들이 이혼을 한 사정, 피고 B가 K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위자료 1,000만 원은 통상의 경우에 비추어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나머지 4,460만 원을 재산분할로 특정하였지만 여전히 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채권 중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460만 원은 원고와 피고 A이 2017. 4. 24.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기 수년 전에 피고들 가족의 주거지를 임차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원이다. 피고 A은 피고 B와 이혼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상당한 액수의 정기적인 급여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명의로 월 보험료 1,123,080원인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2020. 11. 6. 해약 당시 납입총액이 28,077,000원이나 되었다. 이에 반해 피고 B는 2013. 10. 17.경 퇴직금으로 증액된 임차보증금 1,000만 원을 부담하였고, 위 채권 외에 피고 A과 혼인기간 중 형성한 다른 재산을 소유하거나 취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위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 사건 채권 중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5,460만 원인데,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혼인기간 중 형성한 재산의 청산적 요소와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외에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포함하고 있고, 피고들의 이혼 사유나 그 경위,

피고 B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가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박희근

별지

1) 서울가정법원은 2019. 5. 29. 채무자 피고 A, 제3채무자 C로 하여 청구금액 5,000만 원(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하였다.